

서울특별시 도시림등의 조성·관리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관련 1576
----------	------------

제안년월일 : 2020년 5월 25일

제안자 : 서울특별시장

1. 수정이유

- 「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이며, 심의위원회에서 다루는 안건 또한 같은 목적을 지니고 있어 시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다루고 있는 바, ‘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한다’는 항목을 삭제함.

2. 주요 골자

- 안 제10조제5항 “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. 다만, 참석한 위원의 명단은 공개한다.”를 삭제함.

3. 참고사항 : 생략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도시림등의 조성·관리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도시림등의 조성·관리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
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10조제5항을 삭제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제 정 안	수 정 안
<p>제10조(회의의 운영) ① ~ ④ (생략)</p> <p>⑤ <u>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. 다만, 참석한 위원의 명단은 공개한다.</u></p>	<p>제10조(회의의 운영) ① ~ ④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<삭 제></u></p>

서울특별시 도시림등의 조성·관리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0조의2에 따라 위임된 도시림등의 조성·관리를 위한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도시림”이란 「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제4호에 따른 산림 및 수목을 말한다.
2. “생활림”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산림 및 수목을 말한다.
3. “가로수”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수목을 말한다.

제3조(적용범위)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행정구역 내 도시림·생활림·가로수(이하 “도시림등”이라 한다)에 대한 조성·관리 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에 적용한다.

제4조(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) 서울특별시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시림등의 조성·관리 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1. 법 제20조에 따른 도시림등 조성·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
2. 법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승인에 관한 사항
3. 그 밖에 도시림등 조성·관리에 관하여 서울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5조(위원회의 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8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회의 위원장(이하 “위원장”이라 한다)은 도시림 업무를 담당하는 실·본부·국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.

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도시림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되고,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장이 위촉한다. 다만,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.

1. 도시림등의 조성·관리 관련 전문가
2. 관할지역의 주민 대표
3.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

제6조(위원의 임기) ① 제5조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(이하 “위촉위원”이라 한다)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한 차례만 연임 할 수 있다.

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제7조(위원의 해촉)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

1.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
2. 위원이 사망하거나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 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
3. 위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자격을 상실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회적 물의를 야기 시켰을 경우
4.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
5.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

제8조(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)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·의결에서 제척된다.

1.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
2.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민법에 따른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
3. 위원이 해당안건에 대하여 증언, 진술, 자문, 연구,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

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·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,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.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.

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·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.

제9조(위원장의 직무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,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
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,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호선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10조(회의의 운영) ① 위원회의 회의(이하 “회의”라 한다)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.

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부치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회의를

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.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.

④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정·장소 및 주제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, 안건 및 심의에 필요한 자료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.

제11조(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) ① 서기는 회의가 끝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·보관하여야 한다.

1. 회의 개최 및 폐회의 일시·장소
2. 출석위원 서명부
3. 심의 사항
4. 회의진행 또는 현지조사 상황
5. 위원 및 출석인 발언 요지
6. 심의 결과

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공개할 수 있다.

제12조(위원의 의무) ① 위원은 회의 소집의 통보를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위원회에 출석하여야 한다. 다만, 당연직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도시림 업무를 담당하는 과·담당관의 소속 담당 사무관 중 당연직 위원이 지명하는 사람이 그 직무를 대리할 수 있다.

②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으로 알게 된 정보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.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위원으로 위촉될 때에 이에 대한 서약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13조(의견청취)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·자문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에게 출석을 요청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.

제14조(현지조사) 위원회는 상정된 안건의 심의·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.

제15조(위원장의 의사진행권 등) ① 위원장은 위원 또는 출석한 사람이 안건과 관계없는 사항을 발언하거나 소란행위 등으로 회의진행에 지장을 일으킨 경우에는 이를 중지시키거나 당사자를 퇴장시킬 수 있다.

②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하였거나 회의 중에 퇴장 또는 이탈한 위원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.

제16조(안건의 재상정) 심의 결과 부결·부동의 된 안건은 원칙적으로 5년 이내에 동일안건으로 위원회에 재상정을 할 수 없다. 다만, 부결·부동의 사유가 해소된 경우, 대상지 또는 주변 환경의 현격한 변화 등으로 재상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.

제17조(간사)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. 이 경우, 간사는 도시림 업무 담당 사무관이 되며, 서기는 도시림 업무 담당자가 된다.

제18조(수당 및 여비) ① 위원회에 출석 또는 서면심사에 참여하거나, 현지조사에 참여한 위원에게는 「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」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당연직 위원 및 심의·자문안건과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공무원은 제외한다.

② 위원이 아닌 관계인이 심의·자문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였거나, 현지조사에 참여하였을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19조(운영세칙)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의2 중 “「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」 제24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위원회”를 “「서울특별시 도시림등의 조성·관리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4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도시림등 조성·관리심의위원회”로 한다.